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박충권 · 안철수 · 박준태
서천호 · 김정재 · 김성원
김상훈 · 조정훈 · 유상범
이만희 · 백종현 · 박수영
엄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괴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를 “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생 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u>발생하면</u> 그 <u>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u> 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 ----- ----- <u>발생하거</u> <u>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u> <u>는</u> ---- <u>침해사고의 예방, 원인</u> <u>분석,</u>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침해사고의 원인 분석</u>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⑤ ----- ----- <u>침해사고의 예방,</u> <u>원인 분석</u> ----- ----- ----- -----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침해사고의 원인</u>	⑥ ----- ----- <u>침해사고의 예방,</u>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
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
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
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⑧ (생략)

원인 분석

⑦

-----침해사
고의 예방, 원인 분석-----

⑧ (현행과 같음)